

『2023년 한국안경 해외유통거점 신규 발굴 용역』 과업지시서

2023. 3.

담당자	부 서 명	성 명	전 화 번 호	이 메 일
	전략연구팀	문소영	053-350-7854	msy@koia.or.kr

목 차

I . 과업개요	1
1. 과업개요	1
2. 추진일정	1
II . 과업내용	2
1. 홍보 자료 제작	2
2. 신규 거점사 발굴	2
3. 기타사항	3
4. 보고사항	3
III . 과업수행지침	4

I 과업개요

1. 과업개요

- 과업명 : 2023년 한국안경 해외유통거점 신규 발굴 용역
- 과업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. 12. 8.(금)까지
- 기초금액 : 금119,875,000원(금일억일천구백팔십칠만오천원) / 부가세포함
- 과업목적
 - 가. 해외 시장 내 안정적 유통망 확보를 위한 해외유통거점 신규 발굴
 - 나. 한국 안경 브랜드와 신규 거점사 매칭 후 현지시장 맞춤형 마케팅 추진을 통한 수출 제고에 기여
- ※ 해외유통거점 : 해외 대형 유통사와 거점 계약을 통해 현지 맞춤형 K-아이웨어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, 신속·효율적으로 한국안경 영향력 확대를 목표함
- 과업범위
 - 가. (홍보자료 제작) 거점사 신규발굴을 위한 사업 안내자료(영문 제안서) 제작
 - 나. (거점사 신규 발굴) 목표 시장 내 규모 및 매출 상위권에 위치한 거점사 발굴
 - 거점사 유형 : 목표시장 내 체인스토어를 운영 중인 대형 안경 유통사 등
 - 목표시장 : 안경시장규모 및 성장률 등이 가장 높은 미국시장 목표
 - 다. (팝업스토어 운영) K-아이웨어 판매 역량 검증을 위한 팝업스토어 운영
 - 라. (사업운영 피드백 제시) 타 지원사업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운영 관련 피드백 제시

2. 추진일정

입찰공고	:	과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	'23. 3월
↓			
과업수행자 선정	:	평가위원회 개최, 협상추진, 계약체결	'23. 4월
↓			
착수보고회 / 과업운영	:	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/ 수시보고	'23. 4월 / 4 ~ 12월
↓			
신규 거점사 발굴 / 팝업스토어 운영	:	신규 거점사 발굴 및 팝업스토어 현장 점검	'23. 하반기 중 진행예정
↓			
과업 완료보고회	:	과업완료 후 12일 이내	'23. 12월

- ※ 23년 이내 전체과업 추진, 부득이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필수
- ※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은 발주처의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
- ※ 보고회는 대면으로 진행(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율 가능)

1. 홍보 자료 제작

○ 목표시장 내 대형 바이어 대상 거점사 참여 제안을 위한 영문 홍보자료 제작

구분	내용	비고
종류	브로슈어 형태	-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내용 및 범위 조율 - 저작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산출물 제작
범위	발주처(기관) 및 지원사업 소개, 성공사례 등	
제출	편집 가능한 상태의 파일 및 샘플 책자 제출	

※ 세부 내용은 발주처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제안사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조율 가능

2. 거점사 발굴 및 팝업스토어 운영

구분	내용
거점사발굴	- 목표 시장 내 대형 바이어 대상 아웃바운드 방식의 사업 참여 제안 및 발굴 ① 발주처가 요청하는 기업 리스트를 우선순위 발굴 ※ 우선순위 리스트 : 목표 시장 내 매출 및 회사 규모 상위권 리스트(Top1~50 등) ② 우선순위 리스트 계약 미체결 시, 사유 분석 및 차순위 대상자 리스트 제시 ※ 판매(거래) 현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차순위 리스트 제시 필수 ※ 차순위 리스트 중 발주처와 협의를 통한 발굴 추진
팝업스토어	- K-아이웨어 거래 역량 증진을 위한 팝업스토어 운영 ① 신규 팝업스토어 운영 : 제안사가 발굴한 신규 거점사의 체인스토어 등을 대상으로 팝업스토어 운영 - 팝업스토어 운영 세부사항 협의(장소, 기간, 운영전략, 물류 등) - 실적 제고를 위한 추가 전략 기획 및 추진 ※ 세부 운영 내용 확정 후, 참여 안경기업 모집 예정(5社 내외 모집 예정) ※ 필요시, 바이어-최종참여기업 업무협의를 위한 미팅 지원 필요 ② 기존 팝업스토어 운영 : 발주처가 요청하는 미국 내 기존 바이어 대상 팝업스토어 운영(1개소 이상 예정) - 팝업스토어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- 발주처와 협의한 KPI 달성 필수(거래 실적 등) - 모니터링 방법,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필수 - 팝업스토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성장가능성 등 제시 ※ 기업 신뢰도, 매출 등 자료를 바탕으로 K-아이웨어 영향력 및 성장가능성 등 제시
그 외	- 미팅 조율 ① 거점사 발굴 또는 팝업스토어 성과 제고 등을 위한 발주처 현지 미팅 지원 ② 그 외 발주처가 요청하는 현지 안경 관련 VIP* 미팅 지원 * 현지 안경 빅바이어 및 협회 등 ※ 원활한 미팅 추진을 위한 발주처 요청사항 지원(통역 등) - 추가 피드백 제시 ① 타 지원사업 성공사례* 및 기존 체제(해외유통거점운영사업) 관련 피드백 제시 * 발주처 해외거점 형태의 타 수출 지원사업 및 제도 운영사례 분석

※ 세부 내용은 발주처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제안사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조율 가능

3. 기타사항

- 물류관리
 - 팝업스토어 운영을 위한 전반적 물류 관리(국제 및 해외 현지 등)
 - 참여기업의 본 과업 관련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력 지원
- 실적관리
 - 발주처와 협의한 KPI 달성 및 필요시 상담일지 작성 등
 - ※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 및 보완방안 제시 必
 - 행사종료 후 필요 시 추가미팅, 계약 등에 대한 후속조치(과업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사후관리)
- 참여기업 관리
 - 사전 설명회 : 팝업스토어 추진 세부사항 안내, 일정 조율 등
 - 수시 현황 공유 : 추진현황(매칭, 스케줄 등) 수시 공유, 의견 수렴 등
 - 기업별 레포트 정리 : 현지 시장 및 바이어 종합 피드백 레포트 제공
 - 그 외 발주처가 참여기업 관련 요청한 사항 조사 및 정리 등
- 그 외
 - 본 과업을 통해 산출되는 모든 결과물은 발주처로 공유 必
 - 본 과업 총괄책임자는 과업 추진 현황 및 일정 등을 수시 보고
 - ※ 과업 수행 현장 모니터링 등 세부 보고 방법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율 예정
 - 행사 진행 후 정산보고서 등 정산 관련 서류 취합 및 제출
 - K-아이웨어의 수출 제고를 위한 추가 방안 제안 등

4. 보고사항

- 과업 진행사항 보고

구분		보고시기	내용
정기보고	착수보고회	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	· 착수보고서 제출
	완료보고회	11~12월 중	· 완료보고서(보고서 및 PPT 형태) ※ 추후 정상보고서 포함 제출
수시보고	중간보고	수시(주요과업 단계별)	· 주요 이슈사항 및 처리결과 등
	기타	이슈사항 발생 즉시	·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
※ 보고회는 대면형태를 기본적으로 진행하나,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율 가능

- 과업 최종 성과품

구분	최종산출물	형태	수량	내용
완료보고서	최종보고서	제본	3(컬러2,흑백1)	· 요약본(발표용)
		파일	1(외장하드 제출)	· 최종본
정산보고서	정산보고서	제본	1	· 세부 사용 내역 및 영수증 증빙 필수
		파일	1(외장하드 제출)	

※ 수량 등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율 가능

1. 사업수행 일반지침

-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
-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및 보완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
-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,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함
- 발주기관은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, 발주기관의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용역결과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·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
2. 보안 관련 사항
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, 과업 진행 시 발생한 중간생산물 및 모든 과업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 및 통신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과업기간 및 향후에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·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음
-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, 그 외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함
- 과업수행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민·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

3. 분쟁의 해결

-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,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,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
- 본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
-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,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

4. 계약의 해지

-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 - 가.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
 - 나.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
 - 다.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
 - 라. 과업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오차가 있는 경우
- ※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,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용역사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